

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전파감시(Radio Spectrum Monitoring)
- 불법무선국 조사 · 단속
-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
- 국내위성 보호 및 국내 · 외 위성감시

신속 ·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
- 무선국 허가 · 검사
- 방송국 허가 · 검사
- 통신사업자 등록 · 신고
-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
-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

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
- 불법감청설비 조사
- 불법스팸 전송자 조사
-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
-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
- 방송편성비율 확인
-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

전파 이용 촉진
-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
- 전파혼신 조사
- TV 수신환경 조사
-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
- 위성 전파환경 조사

국제 교류 협력
- 인접국간 전파관리 협력
- 국제 표준화 활동
-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
기술 교류 및 연구 지원
- 전파통신 기술 지원
-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

CRMS
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

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!
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.

중앙전파관리소는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
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
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

인터넷 전자민원 : emsit.go.kr
민원상담 : 080-700-0074

전국 전파관리소

기관명	주 소	전화번호
중앙전파관리소	(05830)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	02-3400-2000
위성전파감시센터	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	031-644-5900
서울전파관리소	(08249)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	02-2680-1700
- 서울북부사무소	(11604)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152	031-849-5800
부산전파관리소	(46703)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00
광주전파관리소	(58214)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00
강릉전파관리소	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80
대전전파관리소	(35283)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	042-520-4100
- 당진사무소	(31754)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	041-360-2800
대구전파관리소	(42043) 대구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00
전주전파관리소	(55316)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070
제주전파관리소	(63037)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00
청주전파관리소	(28567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	043-261-5811
울산전파관리소	(45013)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10

crms.go.kr

대한민국 전파·방송통신의 중심
중앙전파관리소

방송통신기자재
안전한 제품을 사용합시다!



중앙전파관리소
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

방송통신기자재란?

-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·기기·부품 등을 말하며, 유선, 무선 및 정보기기 등이 해당됩니다.
  ※ '방송통신기기' 또는 '정보통신기기'라고도 함
- 방송통신기자재는 정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
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?

-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-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·제조·수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고, 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.

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?

- 전파의 혼·간섭을 줄 수 있는 휴대폰, 무선랜, 무선조정기 등 무선기기
- 방송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기, 모뎀, 팩시밀리, 셋톱박스 등 유선기기
- 컴퓨터, 프린터, 모니터, 디지털카메라, USB, MP3, 차량용 블랙박스 등 정보기기
- 텔레비전수상기, 전기청소기, 전기밥솥, 조명기구 등 전기용품



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제품에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
  ※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는 제품 내용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

• 인증마크

방송통신위원회 — 2010년까지

2011년부터

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?

- 불량 제품과 달리 안전합니다.
- 화재,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파 영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.
- 주변기기에 간섭 및 오작동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.

KC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발견하면?

-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지방전파관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중앙전파관리소
- 전화(무료) 080-700-0074
- 인 터 넷 www.crms.go.kr

※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면 전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

- 위반자에 대한 벌칙

위 반 내 용	처 벌 내 용
•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·수입한 자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•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진열(인터넷 게시 포함)·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·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• 복제 또는 개조·변조한 기자재를 판매·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진열(인터넷 게시 포함)·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·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	
•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·대여한 자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진열(인터넷 게시 포함)·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·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